

의안번호	2217310
의 퇴 인	서지영 의원
회 답 일	2026.06.17.
추계번호	26C1295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7억 3,500만원, 2031년 44억 5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29억 5,900만원(연평균 45억 9,2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개별유아교육지원 등 (안 제 21조의5)	4,735	4,662	4,591	4,520	4,451	22,959	4,59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3 (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)	(제3항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2	안 제21조의5 (개별유아교육지원 등)	(제1항)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(이하 “개별유아교육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별유아교육지원은 수업 상황,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하되,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		(제4항) 교육감은 매년 개별유아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,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1조의3 (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)	×	·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그러나, 교원의 직무에서 유아생활지도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분리하기 어렵고, 지도의 유형이 다양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2	안 제21조의5 (개별유아교육지원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감이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 - 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시·도교육청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해당 조항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학교장과 교원의 일시적인 학생 분리 및 개별적인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5. 10. 2. 시행됨
 - 이에 시·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각급학교에 개별학습지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단가 및 예산 산출 방식을 준용함
 - 한편,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개별유아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나, 기존 예산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 - 참고로, 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4제7항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교육감이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시·도교육청은 기관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음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시·도교육청의 개별학습지도 수당 단가 및 예산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29억 5,900만원(연평균 45억 9,200만원)으로 추계
 - 시·도교육청은 지원 단가에 관할 구역 내 학교 수를 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
 - (단가) 시·도교육청별로 교당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양하여 중위값인 60만원으로 하고, 추계기간동안 일정하다고 가정
 - (유치원 수)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치원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최근 5년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전망

[표 2]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원 단가(A, 만원)	60	60	60	60	60	—	—
유치원 수(B, 개)	7,892	7,771	7,651	7,534	7,418	—	—
추가재정소요 (C=A×B, 백만원)	4,735	4,662	4,591	4,520	4,451	22,959	4,59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